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중앙행정기관의 감사조직 기능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감사 인력 4명(5급 1명, 6급 3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6. 0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기획예산처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755”를 “759”로, 일반직 계 “748”을 “752”로, 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“194”를 “195”로, 행정주사 · 통계주사 · 사서주사 · 공업주사 · 임업주사 · 시설주사 · 방재안전주사 · 전산주사 · 방송통신주사 ·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“195”를 “198”로 한다.

별표 1의2 중 총계 “762”를 “766”으로, 일반직 계 “755”를 “759”로, 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“214”를 “215”로, 행정주사 · 통계주사 · 사서주사 · 공업주사 · 임업주사 · 시설주사 · 방재안전주사 · 전산주사 · 방송통신주사 ·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“186”을 “189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(제46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755</u>	<u>759</u>	+4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748</u>	<u>752</u>	+4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사서 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임업사무 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 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 관 ·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	<u>194</u>	<u>195</u>	+1
행정주사 · 통계주사 · 사서주사 · 공업주사 · 임업주사 · 시설주 사 · 방재안전주사 · 전산주사 · 방송통신주사 ·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	<u>195</u>	<u>198</u>	+3
·	·	·	

[별표 1의2]

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(제46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762</u>	<u>766</u>	+4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755</u>	<u>759</u>	+4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사서 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임업사무 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 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 관 ·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	<u>214</u>	<u>215</u>	+1
행정주사 · 통계주사 · 사서주사 · 공업주사 · 임업주사 · 시설주 사 · 방재안전주사 · 전산주사 · 방송통신주사 ·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	<u>186</u>	<u>189</u>	+3
·	·	·	
·	·	·	